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인재경영실 인사부

제정 2007. 12. 26. 규정 제111호
개정 2010. 4. 26. 규정 제141호
개정 2015. 10. 15. 규정 제273호
개정 2019. 12. 13. 규정 제385호
개정 2022. 9. 1. 규정 제4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후보자 모집방식 결정
2. 임원후보자의 서류 및 면접심사
3. 임원후보자의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4. 임원후보자의 추천배수 결정 및 추천
5. 원장후보자와 계약내용·조건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15인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비상임이사 위원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비상임이사 위원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정수의 2분의 1 초과 3분의 2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 위원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주재하는 비상임이사 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15.>

③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되, 심

사평가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15.10.15.>

④ 심사평가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1인은 별도 의결기구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자(심사평가원 임·직원은 제외)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3.>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별도 의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조(구성시기)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만료시기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같다.

제6조(임원후보자 모집) ①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로 응모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후보자를 재모집하고, 후보자 모집을 위해 공개모집·추천 방식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방식에 의한 추천대상자에게도 서류제출, 면접심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공개모집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기간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15.10.15.>

③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제출서류) 임원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지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9조(자격요건) ① 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5. 기타 우리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이 있는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감사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자
3.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15.10.15.]

제10조(심사원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학연·지연·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이 임원후보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당해 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심사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응모자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회피의 방식 및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15.>

제11조(심사기준)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1.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능력
3. 조직관리능력
4.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공직윤리
6.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2차 면접심사는 별표 3의 면접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④ 임원후보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⑤ 최종 추천후보자수 등은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의 결서에 의하여 원장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사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각각 3배수 내지 5배수로 추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5.10.15.>

② 추천자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없이 추

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14조(원장과의 계약 등) 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자와 계약 내용·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제17조(비밀의 유지) 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취득하였거나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간사 및 회의 참관자는 추천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추천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규정 제86호)은 폐지한다.

제3조(원장추천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아 임명된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4.26.>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5.>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3.>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9.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10.15.>

심사항목별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전문가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주)} 과 경험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문제해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능력
조직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능력 • 업무개선 및 자원활용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공직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준법성, 도덕성 등
리더십, 윤리관, 인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비전,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

주 :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포함한다.

[별표 2]

서류심사평가표

구 분	배점	계	평 가 단 계					
			최상 (20)	상 (16)	중상 (12)	중 (8)	하 (4)	부적격 (0)
계	100							
전문가적 능력	20							
문제해결능력	20							
조직관리능력	20							
의사전달능력 및 협상능력	20							
공직윤리	20							

[별표 3] <개정 2015.10.15.>

면접심사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만점)
		최상	상	중상	중	하	
전문성 (20)	1.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 효율성 위주의 조직 경영마인드	5	4	3	2	1	
	3. 현안과제의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 환경변화에측을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쉽 (20)	1.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 직원의 안전과 조직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인성 (10)	1. 공직자로서의 자질,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실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15.>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

본인은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추천위원의 위촉을 승낙합니다.

1. 추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최종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후보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는 추천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 한다.

※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생 년 월 일 :

- 승낙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4.26., 2015.10.15., 2022.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지원서

응모 직위명		응모번호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출생지 (출신지)							
		전 화	[주택]() -		휴 대 폰		E-mail		
	[직장]() -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 역 사 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 격 및 면 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포상실적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9.1>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

추천 직위명 :

추천대상

성명	생년월일	추천사유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
·
·

귀하